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7662호 전면개정 2005. 08. 04.)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(법률 제7664호 신규제정 2005. 08. 04.)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위법의 내용 및 법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제명 띄어쓰기

-「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」을 「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로 함.

○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상위법 조항을 반영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・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・관리조례」”을 “「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명 「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」	**제명** 「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
제13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군수는 **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**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**(생 략)** ③ **(생 략)**	**제13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---------**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의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**(현행과 같음)** ③ **(현행과 같음)**